

## 親權廢止論의 韓國親權法에 대한 意義

金由美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요 약>

친권은 의무성이 강한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권의 의무성·후견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론으로 친권후견통일론(친권폐지론)이 있다. 본 고에서는 子를 위한 친권의 발전적 발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동 이론이 우리 친권법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

## The Meaning of the Theory on the Unification of Parental Right and Guardianship upon Korean Civil Law

Kim, You-Mee

Professor of Law

### <abstract>

Parental right is generally accepted as a duty rather than a right. As a result of emphasis on the side of duty, there emerged a theory on the unification of parental right and guardianship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abolition of parental right. This theory is estimated as a developmental idea of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at theory in the light of Korean civil law.

### 1. 問題의 提起

親權의 性格의 变천은 親權概念의 变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1)</sup> 독일에서 19세기말까지 널리 사용되던 väterliche Gewalt는 1900년의 독일 민법 제정으로 elterliche Gewalt로 바뀌었고

1980년부터는 elterliche Sorge로 바뀌어,<sup>2)</sup> 親權이라는 용어는 父母가 子女의 養育과 성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고까지 인식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바로 親權의 性格變化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親權의 權利性에 대한 회의<sup>4)</sup>와 함께 權利性을 부인하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의 대체적인 견해는 親權을 權利의 義務性 내지 義務의 權利性이 혼연일체가 된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나,<sup>5)</sup> 그 本質이 父母의 利益을 위한 權利가 아니고 子의 保護를 위한 義務라고 하고 있으며<sup>6)</sup> 더 나아가 親權의 義務性 및 後見性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後見法상의 적극적이고도 사전적인 국가적 관여의 확보와 함께 親權法의 내용을 後見法에 접근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7)</sup>

친권의 후견성·사회성이론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後見制度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다 親權을 흡수시키는 親權廢止·내지 親權後見統一論으로 이어진다. 親權廢止·내지 親權後見統一論은 子의 행복이 社會的으로 중시되는 兒童福利의 理念이 親權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최근 20세기적 법리인 子를 위한 親權의 발전적 발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sup>8)</sup>

1) 具然昌, “親權制度의 再照明”, 家族法研究 세4호, 1990, 156면.

2) 프랑스에서도 父權(l'autorité paternelle)이라는 용어가 1970년 6월 4일 法으로 親權(l'autorité parentale)으로 바뀌고, 親權은 父母의 特權이라기보다 父母가 부담하여야 할 하나의 職務(fonction)로 간주되었다. Alain Bénabent, Droit Civil(La famille)(5e éd.), Litec, 1993, n° 604.

3) 영국의 1989년의 the Children Act는 子女를 양육하는 것이 法의 權利의 문제라기보다는 責任의 문제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parental responsibility라는 概念을 도입하였고(Bromley & Lowe, Family Law, Butterworths, 1992, 253면), 父母의 책임이라는 概念은 1989년의 UN의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 제18조에도 규정되어 있다(…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4) 親權의 權利性에 대한 회의는 子의 保護敎養問題을 家族이나 親族自治에 방임하여서는 안되고 社會·國家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입장은 親權을 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社會·國家에 대한 임무로 보고 그 後見性과 社會性을 더 강하게 요청하며(於保不二雄·中川淳/於保不二雄, 注釋民法(25), 有斐閣, 1994, 5면) 종래의 親權의 보증 내지 연장이었던 後見制度가 社會性을 깊이 띠고 있는 점을 강하게 내세워 後見制度에 親權을 흡수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子의 행복이 社會적으로 중시되는 兒童福利의 理念이 親權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고, 20세기적 법이념인 子를 위한 親權의 발전이라고 한다.(佐藤隆夫, “親權”, 民法總合判例研究, 一粒社, 1981, 3면; 具然昌, 앞의 글, 156면).

5) 具然昌, 앞의 글, 156면; 朴秉漢,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202면; 金麟洙,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1, 312면; 金柄大, “친권자의 보호교양의무”, 가족법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 I), 박영사, 1991, 466면; 萊壽川, 친족상속법-가족법, 일신사, 1994, 421면, 金容漢, “親權의 本質과 構造”, 金斗憲教授華甲紀念論文集, 1964, 317면. 權利義務라고 하는 의견들은 한결같이 義務를 다할 權利, 즉 義務를 他人에게 간접받지 않고 다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深谷松男, 現代家族法, 青林書院新社, 1983, 25면에서는 親權은 子를 保護하는 義務를 타인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6) 金麟洙, 위의 책, 312면에서는 우리 民法이 親權이 子를 위한 義務임을 좀더 명문으로 강조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밖에 韓暉熙, “親權의 效力”, 월간고시, 1989/8, 65-66면. 吳, 개정가족법론, 대왕사, 1990, 48면에서는 자의 보호와 교양에 중점을 둔 의무적 측면이 강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영국의 Gillick결정은 친권이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부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한도에서만 계속되고,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면 종료한다고 하였다. Bromley & Lowe, 앞의 책, 295면.

7) 具然昌, 앞의 글, 157면; 金容漢, “英法上의 未成年者 後見-親權·後見 통일방책에의 시사로서”, 법조 12권 7호, 1963, 43면 이하.

8) 具然昌, 앞의 글, 156면, 佐藤隆夫, 앞의 책, 1981, 3면.

이 이론은 일본의 現行民法이 시행된 후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약화되어 오면서도 계속 맥을 이어 오고 있는데<sup>9)</sup> 우리 나라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설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복리라는 이념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흐름은 소극적으로는 친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다 넓 권위적인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든가 혹은 적극적으로 子를 위한 친권의 이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행 친권제도를 손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친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친권후견통일론 내지 친권폐지론의 내용을 살펴보고<sup>11)</sup> 그것이 현재 우리 親權法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親權廢止論의 檻頭와 그 内容

親權廢止 및 親權과 後見의 통일이 학설로서 처음 주장된 것은 1950년 於保不二雄교수에 의해서였다. 그는 親子法 발전의 개관으로 親子法은 “家를 위한 親子法에서” “親을 위한 親子法” 으로 나아가 “子를 위한 親子法”<sup>12)</sup>으로 진화한 것이 그 역사적 발전의 公式이라고 한 후, 親子法은 親權法으로서 權力의 支配關係에서 시작했지만, 家長權의 家族制度의 쇠퇴에 따라서 支配만이 아니고, 親의 子에 대한 監護義務로서의 性格을 점차 드러내게 되었다고 한다. 子를 위한 親子法의 단계에 들면, 親權은 自然的 後見으로서 後見의 性格으로 轉化하기에 이르며 ‘親權法에서 後見法으로’라는 것이 親子法의 하나의 발전 과정인데, 당시 일본 民法上의 親權과 後見은 後見人을 정하는 방식과 親子 사이의 애정의 농후한 차이가 있을 뿐 親權도 父母의 後見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後見과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親權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sup>13)</sup>

그는 親權廢止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親權」이라는 표현이 타당치 않게 되었다고 하는 親權의 消滅을 지적하여 오늘날의 親權廢止論 내지 親權後見統一論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4)</sup> 후에 그는 親權을 중심으로 한 子의 보호에서 나아가 親權을 폐지하고 父母의 自然後見으로서의 後見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親權廢止論을 주장하였다.<sup>15)</sup> 中川善之助가 그 후 「

9) 久貴忠彦, “親權後見統一論について”, 講座/現代家族法 第4卷, 日本評論社, 1993, 3면이하, 於保不二雄·中川淳/明山和大·國府剛, 注釋民法(25), 31면에서는 親權의 後見化는 20세기 후반의 세계적 경향임을 유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0) 具然昌, 앞의 글, 156, 157면; 金納大, 앞의 글, 465, 466면; 金容漢, “英法上の未成年者後見 - 親權·後見統一方策案에의 示唆로시-”, 43-54면. 다만, 具然昌, 앞의 글, 157면에서는 親權法의 내용을 後見法에 접근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임 것이라고 하고 있다.

11) 親權廢止論의 내용에 관해서는 久貴忠彦, 앞의 글, 7면-16면에 자세히 나와 있다

12) 親子法의 발전과정을 이같은 표현으로 지적한 것은 1930년(昭和 5년)에, 中川善之助교수의 “フランスにおける養子法の變遷”, 法學新報 40卷 1號에서였는데 이후의 일본과 한국의 대부분의 家族法 학자들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朴秉淳, 앞의 책, 152-153면, 178면; 金疇洙, 앞의 책, 281면; 具然昌, 앞의 글, 155면; 金柄大, 앞의 글, 459면 등.

13) 於保不二雄, 親子/法律學人系(2) 法學理論編, 日本評論社, 1950, 69면 이하. 久貴忠彦, 앞의 글, 9면에서 재인 8.

14) 久貴忠彦, 앞의 글, 9면.

『親權廢止論 附·親權後見統一法私案』이라는 論文을 발표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親權廢止論」, 「親權後見統一論」이라는 말을 학계에 등장시켰는데, 그는 親權者와 後見人에게는 차별을 둘 필요는 없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親權의 後見的 性格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데 적당하다고 한 후, 父母가 親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종의 權威와 權力を 가진다는 사상은 윤리상 재고되어야 하고, 法律上으로는 한층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의미에서 현행 民法에서 親權이라는 용어 및 제도를 말소하고, 이것을 後見과 同列로 規定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昭和 34년(1959년) 6월, 일본 법제심의회 민법부회는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소위원회에서의 가결정·유보사항(그 2)」을 공포했는데, 그 중에서 親權의 概念 내지 制度의 存廢에 관해서는 親權을 존속시키는 案과 廢止하는 案의 두 가지가 있었다. 廢止案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學者로서 西村信雄 교수는 親權을 현실적으로 「子를 為한 親權」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반적 法意識에 있어서의 親權概念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를 위해서는 우선 「親權」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親權」이라는 이름의 制度도 廐止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親權이 未成年者の 身上, 財產의 保護를 목적으로 하는 制度로 순화함에 따라서, 차츰 그것은 後見에 접근하고 결국은 소위 自然的後見<sup>17)</sup>으로서 점점 後見法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며, 이것이 親權발전의 基本的 방향이라고 설명한 후, 당시의 일본 民法上의 親權과 後見은 접근하여 있고, 개별적으로 본다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 사이에 本質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의 친권폐지론의 내용은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後見人에게는 監督機關으로서 後見監督人과 家庭法院이 있고, 감독사항에 관해서 規定되어 있지만, 親權者에 대해서는 어떤 規定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을 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父母에 대해서 後見監督人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고 또 家庭法院의 監督과 같은 것은 後見人이 父母인 경우와 다른 者인 경우에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둘째, 財產이 큰 때에는 父母인 後見人에게 재산목록작성의무를 과하는 것도 어떠한 지장이 없다. 셋째, 子의 成年到達後の 管理計算에 있어서의 自動相計, 소위 受益權인데 이것은 「子를 為한 親權」과 모순된다. 차액이 큰 때에는 子에게 반환해야 하고, 父母와 父母이외의 後見人 사이에서 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 넷째, 親權者의 주의주의의 後見人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인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차별은 필요 없다.<sup>18)</sup>

15) 於保不二雄·中川淳/於保不二雄, 注釋民法(25), 6면

16) 中川善之助, “親權廢止論 附·親權後見統一法私案”, 法律時報 31권 10호, 1959, 6면. 久貴忠彦, 앞의 글, 11면에서 재인용. 그는 ケース研究, 135號, 1973. 권두언에서도 종래의 입장을 거듭 반복하였다. 久貴忠彦, 앞의 글, 22면의 각주 (26)번에서 재인용.

17) 소위 自然的 後見이란 영국의 1925년의 未成年者後見法(Guardianship of Infants Act)에서 나오는 말인데, 该法上으로는 未成年者の 身上監護(custody)과 財產의 管理를 하여야 할 의무와 권능을 가지는 者는 그 未成年者の 父母이거나 그 밖의 者이거나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後見人이라고 하고, 父母가 後見人인 경우에도 父母라는 이유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權利 즉 親權같은 것은 적어도 被後見人(ward)의 財產에 관한 한 인정되지 않는다. 未成年者の 後見人으로 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첫째 生來의으로(by nature), 둘째 관습에 의해서, 셋째 養育을 위해서(for nurture), 넷째 父母로서의 權利에 의해서(by parental right), 다섯째 父母의 指定에 의해서, 여섯째, 法院의 選任에 의해서, 일곱째 未成年者の 자신의 지정에 의해서이다. 이중 「生來의 後見」이란 (自然的 後見人이 여기에 해당) 그 語原의인 엄격한 의미로서는 父가 男女를 묻지 않고 未成年의 推定相續人(heir apparent)에 대해서 가지는 後見이며 그것은 未成年者が 成年이 되기까지 계속되나 未成年者の 심신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父나 父사망 후의 母도 未成年者が 14세가 되기까지는 「養育을 위한 後見」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한 「父母로서의 權利에 의한 後見」은 子가 21세에 이르기까지 그 身上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꼳 넓은 의미에서는 「生來의 後見」에 지나지 않는다. 金容漢, “英法上의 未成年者 後見-親權-後見統一 方策에의 小考로서”, 44-45면.

그밖에 立石芳枝교수가 親權廢止論에 찬성하여 中川私案의 노선을 따른 「別案」을 발표하였는데<sup>19)</sup> 그것은 결국 中川私案에다 未成年者の 심신의 감호(custody)와 재산관리를 해야 할 의무와 권능을 가지는 者는 父母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後見人(guardian)으로 하는 영국의 未成年者後見法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親權廢止論은 결국 民法의 親權의 章에 있는 規定을 모두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後見의 章에 받아들여, 父母는 父母아닌 者는 모두 未成年者를 保護, 教養하는 地位에 있는 者는 後見人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sup>21)</sup>

### 3. 親權廢止論의 評價 및 問題點

#### 1) 친권폐지론에 대한 평가

親權廢止論者들이 주장하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親權이라는 用語와 制度의 廢止였던 것이고, 親權後見統一은 그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 주장은 일본 現行法 시행에 의한 親子法의 새로운 시대 도래를 계기로, 舊法 시대의 구폐를 일시에 불식하려는 의도로 나왔던 것이고, 하나의 이상실현의 시도였다. 그러나 親權廢止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느꼈고, 親權廢止論은 일반의 積極的인 찬동을 얻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2)</sup> 현재에는 親權法 독자의 재구성이 시도되려고 하고 있고<sup>23)</sup> 親權의 소멸은 여하튼, 이후 親權과 後見의 통일이 실현될 전망은 거의 없다고는 하여도 親權廢止論의 의의와 그것이 이룬 역사적·사상적 역할은 결코 작지는 않다. 그것은 전후 혼란기의 일본에서 장래의 근대적 親子法 실현에로의 절실한 바람을 하나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그 태도의 올바름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24)</sup> 이는 일본 現行法 시행후 아직 시일

18) 西村信雄, “親權廢止論に賛成する”, 法律時報, 31卷 10號, 1959, 76면; 久貴忠彦, 앞의 글, 21면에서 재인용.

19) 立石芳枝, “親權の概念”, 家族法大系V, 1960, 1면. 20면 이하., 具貴忠彦, 앞의 글, 22면에서 재인용.

20) 참고로 영국은 그 후 1973년의 後見法(The Guardianship of Minors Act)의 해설에서 ‘A statutory reformulation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should be undertaken’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 親權의 立法상의 새등장도 논의되고 있었다. 星野英一/國府剛, 民法講座 7, 有斐閣, 1984, 240~241면.

21) 鈴木ハツヨ, 子供の保護と後見, 創文社, 1982, 31면.

22) 親權廢止論은 시사하는 바가 많지만, 문제의 중심은 병칭의 통일이 아니고 自然의 愛情을 기반으로 하 고 그것에 의해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는 親權과 그러한 것이 없는 後見에 있어서 그 내용의 구별( 국가의 감독의 강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317면; 親權廢止論과 區別論(現行法)과의 실질적 차이는 현저한 것이 아니고, 現行法의 구성을 뒤집지 않고서 解釋論 내지는 부분적인立法論으로 해결할 수 있다. 鈴木ハツヨ, 위의 글, 33면. 필자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23) 石川稔, “親子法の問題と課題”, ケース研究 201號, 1984, 久貴忠彦, 앞의 글, 23면에서 재인용; 石川稔, “親權と子どもの保護”, 法學教室, 125號, 1991, 27면; 星野英一/國府剛, 앞의 책, 240면.

24) 久貴忠彦, 앞의 글, 17면. 上野雅和교수는, 親權廢止論의 주장을 요약해서 ①親權의 社會化·公法化 혹은 國家後見化 ②포괄적 신분권으로서의 親權의 否定 ③財產管理面에서의 親權者의 特權의 부정과 他益의 財產管理 임안에로의 흡수의 3가지를 들고, 親權廢止論의 주장을 올바른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親權을 後見에 흡수통일」하는 것에 의해서만은 실현되지 않고, 현재 필요한 것은 특히 상세한 未成年者 保護手段을 정비하고, 현실의 보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上野雅和, “親權·後見統一論はどのような意

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고 새로운 親子法의 基念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의식이 舊法시대에로 역행할 우려가 있었던 그 당시, 분명하게 이러한 역행을 저지하는 역할을 다한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환기하고, 近代親子法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5)</sup>

## 2) 親權廢止論의 장점<sup>26)</sup>

첫째, 親權者에 대한 國家的 監督의 強化이다.

親權者는 親權·管理權의 상실이라는 제재를 제외하고는, 親權行使에 관하여 어떠한 監督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後見人은 희소할 수밖에 없는 指定後見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家庭法院에 의해 선임되고<sup>27)</sup> 그 後見事務의 처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家庭法院 및 後見監督人<sup>28)</sup>의 監督에 복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親權을 支配權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부정하고, 親權도 後見과 마찬가지의 사회성·의무성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現行法에서는 承認하기 어려운 바가 있고, 親權者에게는 後見人과 같이 엄한 監督이 미쳐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sup>29)</sup>

둘째, 財產管理에 있어서 親權者의 特權의 否定이다.

後見人에 있어서는 달리 親權者에게는 子의 財產의 調査, H錄作成義務는 없고, 管理上의 注意義務는 輕減되고, 적어도 條文上으로는 子의 成年 도달시에 子의 養育費·財產管理費와 子의 財產에서의 収益과의 自動相計가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도 또 개인의 독립·인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親과 子가 별개의 인격인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子의 재산관리라고 하여도 他人의 財產의 管理라는 것을 철저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養育權과 財產管理權의 分別의 시도이다.<sup>30)</sup>

원래 親權은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면이 있다. 舊法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父母의 支配權으로서 그 내용의 애매함이 오히려 편리하고 유통성의 면에서 좋았을지 모르

義をもつか”, 山島正男=泉久雄編, 演習民法(親族), 255면 이하; 久貴忠彥, 앞의 글, 23면에서 재인용.

25) 久貴忠彥, 앞의 글, 17면.

26) 久貴忠彥, 앞의 글, 14년-17면

27) 우리 나라에는 指定後見人과 選任後見인의 중간에 法定後見인이 있다.

28) 우리 나라의 후견감독기관으로는 가정법원 외에 친족회가 있다.

29) 島津一郎, 親族法·相續法, 165면에서는 後見制度의 문제점을 논하여, “문제는 親權과의 不調和이다. 親權의行使에 관해서는 制限은 없는 것과 같고, 後見의 경우에는 그것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後見人만이 아니고, 親權者도 한다”고 하고 있다. 久貴忠彥, 앞의 글, 22면의 각주 (28)번에서 재인용.

30) 앞서 말한 1925년의 영국의 未成年者後見法(Guardianship of Infants Act)상에는 後見인이 3종이 있다. 즉, 未成年者の 身上後見人 또는 財產上後見人 그리고 身上과 財產上의 後見인이 그것이며, 身上의 後見人은 未成年者の 財產에 관해서는 어떠한 權限도 가지지 못하고 財產의 後見人은 未成年者の 身上에 관해서 權限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1인의 未成年者가 여러 後見人을 가지는 것은 보통이며 同種의 여러 後見人도 父母 이외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2인 이상의 共同後見인이 未成年者の 福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누구라도 法院의 지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法院은 적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同法 6조). 金容漢, “英法 上의 未成年者後見 -親權·後見統一 方策에의 示唆로서”, 46-47면. 한편 당시 英美法에서는 財產管理權은 親權이 아니라 後見의 문제로 되어 있었다.

지만, 子의 福利를 도모해야 하는 現行法으로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子를 위한 단계로서의 養育權과 財產管理權의 분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身上에 관한 親權이 財產管理權과 동등 내지는 그것에 우위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舊法과는 달리 개인의 존엄을 원리로 하여 子의 인격의 존중이 중시되어야 하는 現行法에 있어서는, 子의 身上에 관한 親權에는 충분한 配慮가 있어야 하고 신중한 규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의미에서 身上에 관한 親權이 강하게 의식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sup>31)</sup>

### 3) 親權廢止論의 문제점

첫째, 현행 後見制度의 實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親權規定을 後見制度에 흡수하려는 廢止論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批判이다. 이러한 批判論은 실제의 後見制度의 운영실태<sup>32)</sup>나 後見制度의 비중감소<sup>33)</sup> 등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親權廢止論은 개개의 조문보다도, 오히려 舊法의 親權思想과의 완전한 결별선언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봐야 하고 이 점에서 親子法이 지향해야 할 바를 하나의理念으로서 보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sup>34)</sup>

둘째, 自然의 愛情을 기대할 수 있는 父母와 그것이 없는 者, 즉 自然的 後見人과 人爲的 後見人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批判된다. 中川私案은 몇 개의 조문에서 父母인 後見人에 비교하여 父母아닌 後見人에게 보다 엄한 제약을 가하여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였고<sup>35)</sup> 西村信雄은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中川私案에서 이들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은 현실과의 타협이었다는 반론이 있다.<sup>36)</sup>

셋째, 父母와 父母 아님 者사이에 차별을 두는 中川私案에 대해서는 결국 명칭만의 변경이 아닌가라는 批判이 있다. 즉 親權後見區別論을 취하여도 親權者의 부당한 親權行使 등을 억제

31) 최근의 학설에는 여태까지 행해오고 있는 身上에 관한 親權과 財產管理의 구분은, 親權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석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子의 양육교육에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여 각각에 어울리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立法論으로서는 財產管理權은 親權에서 떼어내서 親權法을 身上에 관한 親權을 中心으로 한 監護權法으로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行川稔, “親子法の問題點と課題”, ケス研究 201號, 1984, 10면. 久貴忠彦, 앞의 글, 23면의 각주 (29)번에서 재인용.

32) 鈴木ハツヨ, 앞의 책, 36-37면, 有地亨, 家族法概論, 法律文化社, 1994, 166면. 실제의 後見人은 주로 15세 미만의 未成年者의 入義時代<sup>未成年時代</sup>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親權者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未成年者の 재산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임되고, 현실로 그子女를 保護敎養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後見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조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늘날의 後見의 실태가 이러하다면 親權과 後見이 통일된다 하여도 未成年者를 保護하는 미흡하게 된다.

33) 鈴木ハツヨ, 앞의 책, 160면. 親權廢止論은 父母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保護받을 필요가 있는 未成年者が 많은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兄弟의 保護를 중심으로 해서 父母가 있는 未成年者の 保護問題도 여기에 덧붙여서 고려한다는 발상인데, 被後見인이 되는 未成年者の 질대수가 격감하여 後見制度가 家族制度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서 廢止論의 社會的 地盤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34) 久貴忠彦, 앞의 글, 16면.

35) 원칙적으로 父母가 先順位의 後見人이 되고, 後見人解任에 관해서는 父母와 父母아닌 者사이에 차별을 두고, 後見監督人は 父母아닌 者가 後見人인 경우에 선임되고, 財產目錄作成義務, 債權·債務의 提示, 包括的 財產의 調査 등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36) 久貴忠彦, 앞의 글, 16면.

한다면 兩理論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廢止論은 親權이라는 용어의 廢止를 주장하는데, 親權이라는 용어를 親義務라고 변경한다면 廐止論의 적극적인 근거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廐止論은 後見을 親權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區別論과 親權의 義務化라는 사고방식에서 後見으로의 접근을 설명한다는 시각의 차이만이 있게 된다.<sup>37)</sup> 이에 대해서는, 案의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親權廢止論者가 목표로 하는 것은 親權廢止라는 개혁이 일반국민에게 가져올 의식혁명이었고 명칭의 소멸에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sup>38)</sup>

#### 4. 親權廢止論이 우리 民法에 대해 가지는 意義

1) 親權廢止論은 日本의 그 당시의 상황 즉, 現行法 시행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아직 舊法시대의支配權的 親權概念이 많이 남아서 의식의 역행가능성이 염려되던 때에 그것에 대비한 치지책이자 나아가 의식을 일신하여 兒童의 福利 내지 利益을 위한, 즉 子를 위한 親權法에로의 방향을 보여 준 점에서는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民法은 시행된 지가 어느덧 근 40년이 다 되어가고, 그 동안 7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특히 親權과 관련된 개정은 1977년과 1990년에 걸쳐 두번 있었다. 2번의 개정 과정에서 同一家籍에 있는 父가 第1親權者이고 母는 (물론 同一家籍者라야만 했다) 父가 없거나 기타 親權을行使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第2親權者가 되고, 婚外子에 대해서도 生母는 父나 嫡母가 親權을行使할 수 없을 경우에만 親權者가 되고, 離婚하거나 父의 死亡後에 친가에 부적 또는 재혼한 母는 前婚姻의 子의 親權者가 되지 못하고 父母의 離婚時 당사자간에 養育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養育의 責任이 父에게 있었던 것이, 1977년 개정 이후에는 婚姻 중에는 동일호적 내에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父母가 親權을共同으로行使하고 다만 父母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父가 이를行使하도록 하였으며 1990년 개정 때에는 父母의 의견불일치시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家庭法院이 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民法 제909조 2항) 父와 母사이의 不平等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sup>39)</sup> 이에 비하여, 민법상, 子는 父는 母든 평등한 權利를 주장하여 그것을 획득한 당사자에 부수하여 반사적 이익이나 반사적 손해를 받는 존재로 남아 있을 뿐이고, 子 자신을 둘러싼 法律紛爭의 해결에 있어서 그의 幸福이나 利益 내지 福利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sup>40)</sup> 이는 우리 현행 親權法

37) 鈴木ハツヨ, 앞의 책, 32면.

38) 久貴忠彦, 앞의 글, 16면.

39) 물론 그것이 칠서하게 父母平等을 실현하는 規定인가는 民法 第920조의 2의 解釋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다. 예컨대 具然昌, 앞의 글, 163면; 裴慶淑, “改正民法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월간고시, 1990/3, 55-56면.

40) 民法상으로는 제837조의 2의 제2항에 子의 権利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家事訴訟法 제58조 2항은 未成年者인 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未成年者인 子의 帳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規定하고 있고, 家事訴訟規則 제100조는 子의 養育에 관한 處分과 變史, 血緣交涉權의 제한과 배제 및 親權을行使할 者의 指定과 變更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15세 이상인 때에는, 家庭法院은 심판에 앞서서 그 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規定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民法 조문상의 權利實現을 위한

이 아직도 子를 父나 母 혹은 父母의 소유물로 보고 父母는 支配하고 子女는 순종한다는 전근대적인 親을 위한 親權法에 머뭇거리고 있고, 子를 위한 親權法에는 완전히 들어서지 못했음을 보여준다.<sup>41)</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親權廢止論의 親權의 社會性의 強調 내지 國家的 後見에의 흡수 주장은 父母의 權利보다는 責任과 義務의 강조라는 점에서, 보수반동에의 역행 저지선이라기보다는 현대 親權法에의 하나의 유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親權者에 대한 國家的 監督의 強化, 財產管理에 있어서의 親權者의 特權(財產目錄作成義務免除, 注意義務輕減, 収益權 등)의 否定 등을 앞으로 우리 親權法의 개정 방향에 좋은 시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어느 국가보다도 未成年者 보호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日本의 親權廢止論이 모델로 삼았던 1925년의 未成年者後見法(Guardianship of Infants Act) 이후 兒童의 養育과 保護敎養에 관한 여러 法<sup>42)</sup>을 제정했고, 1989년에는 子女의 保護敎養에 관한 公·私法 모두를 망라하여 하나의 法令으로 재정하였는데 그것이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이다. 이 法令에서는 중요한 變化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概念들이 눈에 띈다.

즉 종전에는 parenthood라는 法的概念조차도 없었고 guardianship이란 概念위에 權利와 義務가 기초했었는데 이 法令에 의해 종전의 guardianship이란 概念은 parenthood로 바뀌고, 종전의 parental right and duties라는 概念은 parental responsibility(父母로서의 責任)라는 概念으로 바뀌었다. 이 개념은 子女를 保護敎養하는 것은 그들 父母의 責任이며, 國가의 주된 역할은 그들을 간섭하기보다는 돋는 것이라고 하고, 子女를 保護敎養하는 것이 法의 權利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대한 責任이라는 실체적인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989년法 전반에 사용하는 概念의 인구조물이며, 이는 곧 父母의 근본적 地位를 나타낸다고 한다.<sup>43)</sup>

또한 責任(parental responsibility)은 2가지의 理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첫째, 父母는 그들의 子女에 대해 본분을 다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子女를 돌보는 責任은 國가가 아니라 父母에게 속한다는 것이다.<sup>44)</sup> 1989년의 法은 父母의 責任이라는 概念을 통해서 ‘한번 父母이면 영원히 父母’라는 埋念과 父母의 別居時에 조차도, 子女에게 발생하는 것을 결정할 일응의

訴訟法이나 訴訟規則에 슬며시 규정하는 方法은 正道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41) 다만 1990년 民法 개정 이후에 了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 중에는 판결문에 “兒童의 福祉, 子女의 행복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가끔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後見人 해임에 관한 大判 1992. 3. 25. 91스11 판결(법원공보 제925호, 75면).

42) ① The Guardianship of Minors Act 1971.1973  
The Children Act 1975  
The Child Care Act 1986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mendment Act 1986  
Family Law Reform Act 1969  
The Nurseries and Child-Minders Regulation Act 1948  
② The Foster Children Act 1980  
The Children's Homes Act 198  
③ The Matrimonial Causes Act 1973  
Domestic Proceedings and Magistrates' Court Act 1978 등  
Bromley & Lowe, 앞의 책, 252면 이 중 ①군의 法令은 1989년의 Children Act에 의해 대체되었고 ②군의 法令은 废止되었고 ③군의 法令은 개정증보되었다.

43) Bromley & Lowe, 앞의 책, 253면.

일차적인 責任이 여전히 父母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sup>45)</sup>

한편, 父母로서의 責任(parental responsibility)의 내용으로서는 ⑤ 子女를 위해 家庭(Home)을 제공하는 것 ⑥ 子女와 교섭을 가지는 것 ⑦ 子女의 교육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 ⑧ 子女의 종교를 결정하는 것 ⑨ 子女를 훈육시키는 것 ⑩ 子女에 대한 의료처치에 同意하는 것 ⑪ 子女의 婚姻에 同意하는 것 ⑫ 子女의 入養에 同意하는 것 ⑬ 子女의 여권발행의 거부 ⑭ 子女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고, 子女의 이민에 同意하는 것 ⑮ 子女의 財產의 管理 ⑯ 子女를 保護防禦하며 扶養하는 것 ⑰ 子女의 姓變更에 同意하는 것 ⑱ 소송절차에서 子女를 대리(represent)하는 것 ⑲ 사망한 子女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 ⑳ 子女를 위한 後見人을 지정하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sup>46)</sup> 이는 우리 民法상의 親權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강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9년 法 이전의 後見(guardianship)이라는 概念은 복합적이었고, 특정 개인들에게 兒童을 養育할 權限이 있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으로 곧잘 묘사되었는데, 1989년의 The Children Act에 의한 개정에 따라, 後見이란 어떤 사람이 兒童의 일방 또는 쌍방 父母의 사망에 기해서 兒童에 대한 친의 責任(parental responsibility)이 주어지는 法的節次이고, 後見人이란 공식적으로 兒童의 사망한 父母의 자리에 들어서도록 지명된 어떤 사람을 말한다. 즉 1989년의 The Children Act의 개정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父母(parenthood)과 後見의 概念은 이제 法의으로 구별되고 父母들은 더이상 後見人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sup>47)</sup> 즉, 親權과 後見을 동열로 두고 다만 父母를 自然的 後見人(生來的 後見人)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할 수 있고, 親權이 後見에 통합되는 것이 親權發展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하는 주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우리의 시대상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現行 民法상 親權과 未成年者 後見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일방에게는 혈연으로 연결된 애정이 있고 타방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차이일 뿐 法的인 차이는 아니다. 法的인 차이로는 첫째, 婚姻中子에게는 父母, 養子에게는 養親이 親과 了라는 관계에서 당연히 親權者로 되는 것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sup>48)</sup> 後見人은 法定後見人(제932조)을 제외하고는 指定(제931조), 選任(제936조)의 절차에 의하고 또 신고를 필요로 한다(戶籍法 제83조, 제85조).

둘째, 親權者에게는 따로 결격사유가 없고 親權喪失宣告 또는 代理權・管埋權 喪失宣告의 요건으로서 親權濫用이나 현저한 비행 기타 親權을 行使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혹은 부적당한 管理로 인하여 子의 財產을 위태롭게 한 때라고만 되어 있는데(제924, 제925조), 後見人에게는 해임사유(제940조)를 규정하고 그것과 따로 결격사유를 명문으로 规定해 놓고 있다(제937조).

셋째, 親權者에게는 財產調查 및 日錄作成義務가 없지만, 後見人에게는 이것이 있다(제941

44) Bromley & Lowe, 앞의 책, 298면. 이것은 UN의 兒童의 權利에 관한 협약 제18조에도 規定되어 있다.

45) Bromley & Lowe, 앞의 책, 299면.

46) Bromley & Lowe, 앞의 책, 301면.

47) Bromley & Lowe, 앞의 책, 395면.

48) 물론 혼외자나 離婚한 부부의 前婚中子의 親權者는 父와 母의 협의나, 法院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후에는 신고를 요한다(戶籍法 82조) 그리고 이를 父母 모두가 親權者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親權喪失宣告後 後見이 개시될 수도 있다.

조).

넷째, 親權者의 注意義務는 “자기의 財產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제922조)이지만, 後見人의 그것은 “선량한 管理者的 주의”(제956조, 제681조)이다.

다섯째, 親權者와 後見人 모두 직무종묘시 計算義務가 있는데(제923조, 제957조), 親權者는 子의 財產으로부터의 果實과 그 子의 養育費, 財產管理費用이 相計되는데(제923조)<sup>49)</sup>, 後見人은 이러한 收益權은 없고, 오히려 自己를 為하여 被後見人の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利子를 부가하고 被後見人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958조).

여섯째, 그대신 親權者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는데, 後見人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제955조).

일곱째, 親權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法院의 허가를 얻어 그 法律行爲의 대리권과 財產管理權만을 사퇴할 수 있는데(제927조)<sup>50)</sup>, 後見人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제939조).<sup>51)</sup>

여덟째, 親權者에게는 監督機關이 없지만, 後見人에게는 親族會(제954조, 제941조, 제942조, 제944조, 제945조, 제950조, 제951조)나, 家庭法院(제872조)의 監督이나 許可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兩者 사이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인 아니기 때문에 親權을 親에 의한 自然後見으로서 後見制度中에서 配慮한다면 속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sup>52)</sup>,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바로 그런 점들이 親權과 後見을 구별지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現行法상 親權과 未成年者 後見은 별개의 것이고, 더구나 우리 後見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後見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後見法 자체내에서 成年後見<sup>53)</sup>과 未成年後見으로의 정비가 먼저 논의되지 않는 한, 親權과 後見의 통일의 전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親權의 後見에로의 흡수통일은 단순히 親權法 진화의 理念만에 의하지 않고, 현실의 사회상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sup>54)</sup>

다만, 親權廢止論들이 들었던 문제점들 중에서 親權者에 대한 국가의 감시기능강화<sup>55)</sup>와 財產管理面에 있어서의 親權者の 收益權을 他益의 財產管理一般에 흡수하려는 주장은 앞으로의 親權에 관한立法에 좋은 시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49) 그러나, 무상으로 手에게 財產을 수여한 第3者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財產에 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제923조 2항).

50) 親權증 身上에 관한 것은 포기·양도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解釋되고 있다.

51) 未成年者의 後見人은 재산관리권과 대리권뿐만 아니라 945조 단서의 制限을 제외하고 未成年者の 신분에 관해서도 親權者와 동일한 權利義務가 있다(945조, 949조).

52) 中川善之助, 「親權廢止論-附·親權後見統一法私案」, 法律時報 31卷 10號. 於保不二雄·中川淳/於保不二雄, 注釋民法(25), 12면에서 재인용.

53)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梁彰洙, “成年者扶助制度-限定治產-禁治產-”, 고시연구, 1994(12), 62-73면; 中榮鎬, “高齡化社會에 있어서의 後見制度”,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359면이하; 金容旭, “韓國の成年後見に對する解説と立法の課題”, 제11회 아시아家族法 三國會議자료집, 1997, 1면이하; 新井誠, 高齢社会の成年後見法, 有斐閣, 1994;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速報 成年後見制度の改正に關する要綱試案について”, 戶籍時報 487号,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8/5

54) 於保不二雄·中川淳/明山和夫·國府剛, 注釋民法(25), 69면.

55) 兒童虐待와 관련해서 民法上 親權喪失宣告, 兒童福祉法상의 親權喪失宣告는 별도로 ‘虐待禁止法(가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고(韓寅燮,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 제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1992, 9면;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시안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1994, 75-83면.), 1998.7.1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친권의 일부 제한(특히 신상에 관한 친권)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朴秉濠,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 金疇洙,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1
- 梁壽山, 친족상속법-가족법, 일신사, 1994
- 韓俸熙, 개정가족법론, 대왕사, 1990
- 申榮鎬, “高齡化社會에 있어서의 後見制度”, 가족법연구 제11호, 1997
- 金容旭, “韓國の成年後見に對する解釋と立法の課題”, 제11회 아시아家族法二國會議자료집, 1997
- 梁彰洙, “成年者扶助制度-限定治產·禁治產-”, 고시연구, 1994/12
-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시안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예방대책방안(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1994
- 韓寅燮, “아동보호와 아동의 권리”,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제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1992
- 金柄大, “친권자의 보호교양의무”, 가족법학논총(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 I), 박영사, 1991
- 具然昌, “親權制度의 再照明”, 家族法研究 제4호, 1990
- 裴慶淑, “改正民法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월간고시, 1990/3
- 韓俸熙, “親權의 效力”, 월간고시, 1989/8
- 金容漢, “親權의 本質과 構造”, 金斗憲教授 華甲紀念論文集, 1964
- 金容漢, “英法上の 未成年者 後見-親權·後見 통일방책에의 시사로서”, 범조 12권 7호, 1963
- Bromley & Lowe, Family Law( 8th ed.), Butterworths, 1992
- Alain Bénabent, Droit Civil (La famille)(5e éd.), Litec, 1993
- 於保不二雄·中川淳/編, 新版注釋民法(25), 有斐閣, 1994
- 有地亨, 家族法概論, 法律文化社, 1994
- 新井誠, 高齡社會の成年後見法, 有斐閣, 1994
- 星野英一/國府剛, 民法講座 7, 有斐閣, 1984
- 深谷松男, 現代家族法, 青林書院新社, 1983,
- 鈴木ハツヨ, 子供の保護と後見, 創文社, 1982
- 佐藤隆夫, “親権”, 民法總合判例研究, 一粒社, 1981
-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61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速報 成年後見制度の改正に關する要綱試案について”, 戸籍時報 487号,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8/5
- 久貴忠彦, “親權後見統一論について”, 講座/現代家族法 第4卷, 日本評論社, 1993
- 石川稔, “親權と子どもの保護”, 法學教室 125號, 1991